

토론회

20대 총선, 정당별 노동·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 일시 | 2016년 4월 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 주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만세, 청년이어는미래

순서

■ 사회

-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 주제토론

-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 조승수 (청년만세 대표)
-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

■ 질의·응답

■ 폐회



— 목 차 —

■ 주제 토론문

20대 총선공약 평가 - 노동법적 관점에서.....7	
- 이 상 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4대 정당의 ‘일자리 공약’ 평가.....23	
- 박 동 운 (단국대 명예교수)	
20대 총선, 포퓰리즘 청년정책 진단.....39	
- 조 승 수 (청년만세 대표)	
‘20대 총선, 정당별 청년정책’ 평가.....45	
- 백 경 훈 (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	



제20대 총선공약 평가 -노동법적 관점에서-

이 상 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I. 평가 방법

- 주요 정당의 이번 총선에서 고용노동관련 공약의 정리¹⁾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검토
 - ① 산업경쟁력을 고려하는 글로벌 노동기준에 부합 여부
 - ② 기업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법준수 등 실현 가능성 여부
 - ③ 고용창출을 고려하는 유연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고용시장 인프라 기능 여부

II. 새누리당

<주요 내용>

1. 노동개혁5법

-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차원의 노동법제도 개선 공약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19대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노동개혁5법이 새누리당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음.
-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제도를 대법원 판례기준으로 확대 개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사실상 근로시간단축, 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은 휴일당일 8시간 초과부터

1) 주요 정당의 고용노동관련 공약 내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참여연대, 20대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자료집(2016.3.22.)에서 소개된 3개 야당의 공약과 이 자료집에서 빠진 새누리당의 별도 공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통해 정리한 것임.

부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간은 1개월로, 3개월은 6개월로 확대, 근로 시간 저축휴가제 신설, 근로시간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생명과 안전 핵심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시 무기계약 간주, 근로계약 갱신을 2년의 범위내에서 3회까지만 허용, 35세이상 근로자 신청시 기간제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 허용하고 무기계약 미전환시 이직수당 지급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생명과 안전관련 핵심 업무 파견근로자 제한, 제조업을 제외하고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에 한정하여 파견허용 업무 확대, 파견대가 항목별 구체적 명시, 파견과 도급기준 명확화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상적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일원화 하여 인정

2. 일자리창출 공약 중 내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 주요 산단내 유턴 경제특구 설치: 유턴시 강력한 세계 지원과 무상공장임대 등 보장, 유턴 경제구역을 한시적으로 최저규제지역으로 유턴 기업 안정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근로 허용, 유턴 산단에 공동 연구개발이 가능한 센터 설치 취업희망자 직업훈련 재직자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고급인력 양성센터 설치

<평 가>

- ① 산업경쟁력을 고려하는 글로벌 노동기준에 부합 여부: 생명 안전 관련업무 파견금지, 파견 허용업무 일부 확대, 파견과 도급 구분 기준 등 파견법 내용 등 다수가 글로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못함
 - ② 기업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법준수 등 실현 가능성 여부: 법준수 실현 가능성은 있으나 기업의 법준수 부담이 많이 가중
 - ③ 고용창출을 고려하는 유연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고용시장 인프라 기능 여부: 기간제 법과 파견법 일부에서만 유연성이 담보되는 기능이 발견되고 나머지는 전부 안정성만 담보되는 기능
- 다만 별도의 일자리 창출 공약인 유턴 경제특구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 사용과 관련한 유연화 조치는 일자리 창출 위한 유연성 제고 기능으로 평가

II. 더불어민주당

<주요 내용>

1. 청년고용

- 기업과 노동자들이 주축된 민간의 양보와 희생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 차등적용 +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37만개신규 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부문에서만 매년 3%이상씩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민간으로 적용 확대
 - 주 40시간(휴일근로 포함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용보험 미가입 + 미취업 청년(구직자+NEET) 고용유인 위한 청년안정망(취업활동지원 +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도입
 - 중앙 지방 정부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 증빙 시 취업지원활동 지원(60만원×6개월)
 - 기존 청년내일찾기패키지를 확대 개편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
- 저임금(25.1%), 비정규직(32.5%) 일자리를 OECD수준(저임 16.3%, 비정규 11.3%)으로 감축
-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 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모태펀드의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 중진기금(중기청)·문산기금(문광부)·특허회계(특허청) 등의 출자를 통해 2015년 기준 총 2조 2,261억원 조성 등 다양한 창업 지원

2. 비정규직 사용

-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사용자유제한제도 도입,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분야 외주화 금지 입법

-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 등으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및 불법 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시 즉시 고용의제 제도화
- 시간제-전일제 청구권 보장 및 “좋은 시간제 일자리”모델 개발로 일·가정양립 및 경력단절 극복
-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 비정규직(기간제·파견, 사내하청·용역·도급 등)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사용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비정규직 사회보험료지원 및 EITC로 비정규직들에게 환급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 현행 지원되는 기간제·파견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용역업체 소속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시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을 현행 월 60만원(간접노무비 포함)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 저소득층 근로자 소득증가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 1만원(연평균 13.5%단계적 인상)으로 인상, 생활임금제 전국 확산하여 관련 민간기업까지 적용유도
-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제 도입으로, 국가 및 지자체 발주·용역·위탁사업자의 입찰 및 선정시 우대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신청주체 및 비교대상 확대 등 차별시정신청제도 개선
- 영세사업장 종사근로자 보호: 두루누리지원사업(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건강보험까지 지원 확대,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 보장
-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 및 노동권 보장: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하도급 근로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하여 원청(도급)에 교섭 등 책임 부여 의무화

3. 실업급여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원 확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수급요건, 기여요건)을 완화,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를 연장, 지급수준 상향(현행 직전 직장 평균임금 50%→60%)
- 자발적 이직자 3개월 구직활동시 실업급여 적용 포함, 65세 이상에도 실업급여 적용,

장기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취약계층근로자에게 구직촉진급여 지급 등

- 특수고용노동자 및 가사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제도화

5. 근로기준법

- 정리해고 요건 강화: 강요·기망에 의한 사직서 1개월내 철회하는 숙려기간 도입 및 상시 해고기업에 고용보험료 가중 부과 및 손해배상제 도입, 업무능력결여, 근무성적부진 등에 의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도입 및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시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정리해고 요건을 기업유지 어려운 경우로 한정,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우선 의무화 도입
- 근로시간 단축: 1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휴일 포함 52시간,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하고 특례업종도 최장 근로시간 한도 설정, 근로시간 적용제외 실태 파악 및 재점검 통한 축소, 2020년까지 4인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로시간 규정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 공휴일 대체휴일제 민간기업 근로자에 적용 확대

6. 노동단체권

- 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핵심기준(ILO핵심협약) 비준 등으로 노조법 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설립신고서 반려제도 삭제, 법외노조 통보제도 폐지,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및 협약의 적용률 확대,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선

7. 산업안전보건법

- 하청근로자 및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을 원청(도급)사업주가 지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사용자 범위 확대
- 산재다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

<평가>

- ① 산업경쟁력을 고려하는 글로벌 노동기준에 부합 여부: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사용자유제한제도 도입,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분야 외주화 금지 입법, 비정규직(기간제·파견, 사내하청·용역·도급 등)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사용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하도급 근로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원청(도급)에 교섭 등 책임 부여 등 글로벌 노동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내용이 지나치게 많음

- ② 기업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법준수 등 실현 가능성 여부: 법준수 실현은 따르겠지만 기업의 법준수 부담이 너무 많이 가중되어 탈법이나 법회피 가능성 고조, 특히 2020년까지 4인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로시간 규정을 전면 적용 같은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고,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등 ILO핵심협약 비준은 형법(징역형), 병역법(공익근무요원), 공무원조노법(파업권) 등 다수의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분단상태 등 국내적 입법환경에 비추면 실현이 매우 어려움.
- ③ 고용창출을 고려하는 유연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고용시장 인프라 기능 여부: 유연성이 담보되는 기능은 전혀 없고 전부 안정성만 과도하게 담보되는 기능만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러한 고용시장 인프라 기제가 과연 작동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노정

Ⅲ. 국민의당

<주요 내용>

1. 미조직 근로자 단체 조성

- 미조직 근로자들 보호 위해 노동회의소 설립(상공회의소 대응?): 근로자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을 회원으로 가입, 중앙조직, 시·도, 지역단위 조직 구성 운영 하되, 정부 단체가 아닌 자발적 기구로 육성
- 노동회의소는 근로자의 권익대변, 입법청원, 법률서비스, 정책개발 연구, 교육,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2.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사용자(파견 용역의 경우 근무사업장 사업주)가 부담함
- 상시 지속적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교체할 경우 대체인력 6개월간 채용 금지, 금지기간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업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의무

-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 인사와 노무관리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 시 불법파견으로 간주하여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도록 개정
- 파견법 제7조에 공공기관 파견근로사업 근거 신설하여 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직접 파견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공기관은 최소 행정비용만으로 파견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도록 함

2. 감정근로자 보호

- 블랙컨슈머의 리스트 공유 및 처벌 강화,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 감정치유상담비 지원 및 산재인정 범위 확대, 감정근로업무 담당자 순환배치 활성화, 감정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광고 확대

3.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보호

- 원사업자의 회생절차시 하도급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 우선 지급(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개정)

4. 청년고용할당제 민간으로 확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의무비율 5%로 상향, 5%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으로 확대도입(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순차 적용), 미이행률에 대해 청년고용부담금 부과

5. 공정임금 도입

- 공정임금법 제정: 성별 등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공정임금 위한 임금정보 공개 요구권 도입, 임금차별 입증책임 사용자에게 부과, 정부발주 공사에 대한 적정임금 도입

6. 육아휴직 강화

- 육아휴직 신청시 해당업무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 대체인력 사용 민간기업의 추가비용 정부 지원

<평 가>

- ① 산업경쟁력을 고려하는 글로벌 노동기준에 부합 여부: 정부단체가 아님을 전제하지만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결사체인 근로자단체로 보기 어려운 노동회의소,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사용자(파견 용역의 경우 근무사업장 사업주)가 부담 등은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지 못함
- ② 기업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법준수 등 실현 가능성 여부: 기간제근로를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기간제법 개선과 같은 경우 법준수 실현은 다르겠지만 기업의 법준수 부담이 너무 많이 가중되어 탈법이나 법회피 가능성.
- ③ 고용창출을 고려하는 유연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고용시장 인프라 기능 여부: 더민주 당보다는 과하지 않지만 유연성이 담보되는 기능은 거의 없고 전부 안정성만 과도하게 담보되는 기능만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최소 행정비용만으로 파견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굳이 재정이 투입되는 불필요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고, 실제 파견근로 창출효과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IV. 정의당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 해고제한: 해고 회피 목적으로 배치전환, 교육훈련 명령, 폭언·폭행 등 괴롭힘을 행사할 경우 해당 인사명령 무효화(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 학대해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해자 옹호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취업규칙 공동결정제도 도입: 취업규칙 제·개정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
- 행정지침 남발 규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으로 공공부문의 저성과 퇴출제 저지
- 정리해고 제한: 해고협의 수준의 충분한 대화 통해 경영상 해고 시 발생 피해 최소화, 정리해고 회피하기 위한 희망퇴직 등 제한, 고용부장관 승인으로 전직계획 결정,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 의무, 우선재고용 의무 위반시 고용부령으로 실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고용불안기업에 고용부담금 부과,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보장

2. 통합도산법상 근로조건 보호 개정

- 경영위기 초래한 재벌총수 및 최고경영진의 법정관리인 선임 금지, 부실경영 이사진의 급여(50%이내), 스톡옵션, 퇴직수당 지급금지 및 환수조치, 노동조합과 모든 주주(상장회사)에게 경영실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기를 허용,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책임 전환 및 완화, 책임범위 확대

3.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임 결정절차 개혁(2019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 최저임금 결정절차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공익위원을 선출하고, 회의 공개 등 결정 절차 개선
- 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지급 후구상권 행사, 미성년자에게 최저임금 직접 구두 고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 부과, 기업 공시제 도입
-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제외, 감액규정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과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 근거 법제화
- 최저임금인상과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병행,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정책 추진

4. 성별임금격차 해소

-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페널티 강화, 공기업·대기업 5% 청년 의무고용 시 채용 인원 30% 이상 여성할당 병행, 임신휴직 도입,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5. 고소득자 임금 및 대기업 이익 규제

- 공기업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최임기준 공기업은 10배, 대기업은 30배로 설정
- 대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 통한 임금격차 해소: 위탁중소기업의 이익 중 합의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초과

이익공유제 도입,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 일정액은 하청협력업체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

-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6.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 두루누리사업 II 도입: 특수고용노동자(1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가입, 자발적 이직자 3개월 이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 실업급여 지급 종료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80%, 최대 1년 지원, 청년실업자의 경우는 '청년디딤돌급여'로 별도 지원

7. 비정규직

- 간접고용 형태도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근로: 사용사유 제한, 사용기간 1년, 차별금지 범위 확대, 차별시정제도 전사 업장 적용 및 노동조합에게 신청권 부여
- 무기계약직, 중규직 등 변종 고용형태 규제
- 파견근로: 파견대상 업무 단계별 축소, 하도급 업무 등 직업안정법 적용 확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파견금지 등 3단계 걸쳐 폐지, 도급업체 변경시 근로조건 승계 명문화, 불법파견 하도급업체 공시의무제 도입, 무허가 불법파견 사용시 즉시 원청업체 고용의무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임금인상을 이유로 단가인하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 개념 확대: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통해 파견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 공공기관 간접고용 상한제와 간접고용 현황 공시제 도입,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공공기관 정원, 표준인건비제 합리적

조정,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 반영 등)

- 사내하청 법률로 정규직 전환 강제, 고용형태 공시제와 공공조달계약 입찰 등 연계 유도,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특별근로감독 등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액 현행 1인당 2백만원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와 동일 수준 5백만원으로 확대

5. 근로시간단축

- 장시간 규제: 1주를 7일로 규정, 포괄임금계약 금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시 연장근로 규정 삭제, 11시간이상 연속휴식(임산부 18세 미만은 12시간 이상) 보장,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중복시 중복 가산 지급,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시간 주 35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
- 근로시간단축: 휴게시간 근로시간에 포함(9to5), 연 1,800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정하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법」 제정, 하루 1시간 더 하는 주 4일 근무제 도입
- 연차휴가: 연 30일이상 유급휴가,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공휴일/국경일 유급휴일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입사 초년 하기휴가 1주일 의무제, 최소 2주 휴가제 도입,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공휴일제도 도입

6.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감정근로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직장내 폭언·폭행을 포함한 지속적인 괴롭힘 처벌 및 산업재해 인정,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감정근로 보호 법제화: 감정근로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의무화, 감정근로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인정 법제화,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법제화

7. 청년고용할당제 등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 청년 정규직 고용
- 기회균형채용: 청년고용 일정 비율을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자, 지방대 졸업자 등에

게 할당, 여성 취업자 비율 30% 이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채용제도를 도입

- 미취업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15-34세 미취업자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하여 구직활동 지원
-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 재학생, 특수고용종사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보장

8. 노동기본권 보장

- 초·중·고 노동인권 교육,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초·중·고 교육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안심알바신고센터 확대 운영 개선,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화, 권리구제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지원체계 구축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가사사용인,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전면 적용, 단시간근로자 법정근로시간 이내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 ILO 핵심협약 비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과 우선협약 등 비준

9. 공무원과 교원

- 교사, 교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수노조 합법화(교사, 공무원 정당가입 및 정치후원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10. 외국인 근로자

- 숙련도와 상관없이 국내 취업 허용 노동비자 도입: 노동비자 제도 도입 전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변경 및 고용계약 단기화(1년) 허용,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 폐지, 사업장변경 기한 연장 및 구제제도 마련, 이직 활동 지원, 숙식 기준 마련,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만 이주노동자 취업 허용, 출국 전 퇴직금 지급제도 도입

11. 산재재해 예방 등

- 유해위험업무 정규직 전환, 유해위험업무 도급 금지, 조선업 다단계하도급 금지, 상시 고용업무 정규직화

-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중대재해 사업주 책임자 처벌 강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하한선 도입, 하청·특수고용종사자 산재 원청 처벌, 산재사망에 대한 징벌적 배상 도입, 산재사망 사업장 영업정지 및 사업장 공표제도 도입
- 기업살인법 제정: 다중이용시설의 시민안전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공공안전 사고에 대한 정부 주요 책임자 처벌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전보건법: 중규모 이상 제조업 등 일부 산업 근로자들 대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전 산업으로 규제를 강화, 원청 및 발주처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 강화
- 산재보상 강화: 건강보험과 같이 병의원에 산재환자 산재보험 청구권 대행 권한 부여, 산재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책임 부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평가 기능 독립
- 산재보험법 적용 확대: 특수고용·해외파견 근로자 및 출퇴근 재해, 농민, 1인 자영업자,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직업병 인정, 중소기업 인허가 과정시 산재보험 가입 강제, 개인실적요율제 폐지등 영세사업장에 불리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개선

12. 노사관계

- 노조설립신고제도: 설립신고서 반려제도 폐지, 설립신고증 또는 접수증의 즉시 발급,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금지 조항 폐지 등
- 산별교섭제도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사용자단체 구성 및 교섭 의무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산별노조 제외, 사용자의 기업별노조 특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
-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용역인력 노사관계 개입 금지
-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대신 노동, 경제 문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13. 노동쟁송제도

-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및 노사정 합의제 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노동위원회의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 중장기적으로 노동법원 설립 추진

<평 가>

- ① 산업경쟁력을 고려하는 글로벌 노동기준에 부합 여부: 대기업 CEO와 고위임원 최저 임금 연동 임금상한제(최임기준 대기업 30배), 위탁중소기업의 이익 중 합의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간접고용 형태 차별적 처우 금지, 무기계약직, 중규직 등 변종 고용형태 규제, 파견대상 업무 단계별 축소,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파견금지 등 3단계 걸쳐 폐지, 도급업체 변경시 근로조건 승계 명문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임금인상을 이유로 단가인하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통해 파견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사내하청 법률로 정규직 전환 강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 청년 정규직 고용, 유해위험업무 정규직 전환, 유해위험업무 도급 금지, 조선업 다단계하도급 금지, 산재사망에 대한 징벌적 배상 도입, 산재사망 사업장 영업정지 및 사업장 공표제도 도입, 산별교섭제도화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 및 교섭 의무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산별노조 제외,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용역인력 노사관계 개입 금지 등 글로벌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
- ② 기업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법준수 등 실현 가능성 여부: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가사사용인,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전면 적용, 단시간근로자 법정근로시간 이내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과 우선협약 등 비준(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병역법 등 국내의 다른 입법개선이 전제), 연 1,800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정하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법」 제정(근로시간단축이 일자리로 직결된다는 인과관계 규명이 보편적이지 못함), 노동위원회를 중장기적으로 노동법원 설립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과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 근거 법제화, 최저임금인상과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병행,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정책 추진 등은 실제 법준수 내지 입법화 가능성은 매우 낮음.
- ③ 고용창출을 고려하는 유연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고용시장 인프라 기능 여부: 더민주 당보다 더 과하게 유연성이 담보되는 기능은 거의 없고 전부 안정성만 과도하게 담보되는 기능만 가지는 것으로 평가.

V. 종합 평가

- 20대 총선 공약에 대한 각 정당별 검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새누리당의 고용노동관련 공약은 19대국회시 제출된 노동개혁5법이 중심을 이루지만, 전반적으로 파견허용업무와 같이 글로벌 노동제도에 매칭되지 않는 내용과 일자리 여

건에 필요한 유연성 기능이 부족하여 활발한 고용창출시장 기능은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

- 더민주당의 고용노동관련 공약은 글로벌 노동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산업 내지 기업 경쟁력에 열세인 지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기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법개선 공약으로 법준수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며, 유연성 기능은 전혀 없고 오로지 안정성만 담보되어 고용창출시장 작동 가능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국민의당 고용노동관련 공약은 공약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역시 글로벌 노동제도에 매칭되지 못하는 내용과 기업의 법준수 부담이 많이 가중되게 할 가능성,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유연성 기능은 거의 없고 전부 안정성 기능만 가져 고용창출시장 작동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평가.
- 정의당은 더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글로벌 노동제도는 물론 기업 내지 산업 경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집단적 노사관계제도마저도 산별 교섭 강제 등 글로벌 환경에는 없는 것이며, 기업의 부담능력 등 법준수 능력도 거의 고려하지 않거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추진 등 실제 법준수 내지 입법화 가능성은 매우 낮고, 유연성 기능은 거의 없으며 더민주당보다도 더 과한 안정성 기능만 가지는 것으로 평가.
- 초기 노동법은 주로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의 보호에 전력을 해야 했으나, 이러한 노동법의 미션이 진즉에 달성된 오늘날의 노동법은 아웃사이드인 실업자의 고용시장 진입이라는 고용시장 기능과 노사간 공정한 협력이라는 노사관계 질서 기능이 필요
- 총선에 임하는 주요 4개 정당의 고용노동관련 공약은 당면한 실업 등에 대응한 고용시장 기능과 노사관계 질서 기능의 탐색보다는 여야정당 모두 포퓰리즘적 입법공약을 19대국회 때보다 더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보수여당인 새누리당마저도 포퓰리즘적 입법공약을 계속 지향하고 있고, 더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3당은 포퓰리즘적 입법을 넘어 고용창출은 기업에 대한 고용친화적 인프라지원이 아닌 지원금이나 할당강제로, 고용보호도 공정책임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의 무한책임이라는 식으로, 지속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아적(小兒的) 이데올로기적 입법공약 경쟁을 가속하고 있음.
-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이 과연 우리 기업과 경제산업이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정보 공급기지가 필요하고, 포퓰리즘적 입법공약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는 정치 환경 조성이 필요.

4대 정당의 '일자리 공약' 평가

박 동 운
단국대 명예교수

4월 13일에 실시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대 정당이 제시한 '일자리 공약'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내게 준 과제는 4대 정당의 일자리 공약과 관련하여 '① 실현 가능성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평가다.

정책 평가에서 기준 설정은 필수다. 나는 4대 정당의 일자리 공약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점을 핵심내용으로 내세운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는 기업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인프라' 구축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따라서 첫째 기준은 '일자리정책 관련 정부의 인프라 구축 방안이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이므로 일자리정책도 '규제' 아닌 '반규제'라야 한다. 따라서 둘째 기준은 '일자리정책이 규제적인가, 반규제적인가?'이다.

셋째,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이므로 일자리정책도 '공유'보다는 '개인의 창의'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셋째 기준은 '일자리정책이 공유적인가, 창의적인가?'이다.

4대 정당의 일자리 공약은 한결같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평가는 여당을 시작으로 야당의 크기 순서로 이어진다. 평가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매긴다. 각 당의 공약 평가 끝에 총평을 곁들인다.

평가에 사용된 텍스트는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공약, 세 야당은 '20대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에서 논의된 공약이다. 야당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참여연대 주최로 2016년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약을 정책순위 1, 2, 3으로 나누어 '10대 정책'을 내놓았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정책순위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만든다

(1) U턴 경제특구 설치

콘텐츠: ① U턴 전 편안한 국내 정착 유도 ② U턴 후 성공적 국내 정착 ③ U턴 경제구역을 혁신의 구심점으로 육성

평가: 보통

① 실현 가능성: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내에 U턴 경제특구 설치'를 내세워 '인프라 구축'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6~201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초과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순유입(유출-유입)은 마이너스 약 150조 원(1,313.9억 달러)에 이른다. '순유입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첫째,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고 둘째, 기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U턴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 '한계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는 될 영향: 노동시장 규제·기업 규제 완화 없이 U턴 기업 경제특구만 설치한다고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2) 관광산업 활성화

콘텐츠: ① 한국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K-pop 공연장 조성 등) ②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진흥(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등) ③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구축(코리아투어패스 도입 등) ④ 기타(의료관광 등)

평가: 좋음

① 실현 가능성: 나는 1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하나의 관광도시로 만들자'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장해온 터라 새누리당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 인프라 구축이 눈에 띈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코리아패스'는 이명박 정부가 '관광산업선진화법' 도입으로 이미 도입된 것인데도 언급되고 있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는 될 영향: 관광산업은 종합산업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어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K-pop에다 K-food, 면세점 등도 포함시키고, 의료관광을 '기타' 아닌 주요 항목으로 부각시켰으면! 문제는 산악관광, 의료관광 등에서 규제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함.)

(3) 해양관광 활성화

콘텐츠: ① 권역별 종합해양관광지구 및 해양관광 바닷길 조성 ② 해양자원 활용한 해양치유(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 ③ 크루즈 산업 활성화 위한 인프라(선박 확보, 크루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④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추진 ⑤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중레저법> 제정 및 업종 신설, 지역별 수중레저 포인트 발굴 및 수중 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수중레저거점 기반조성 추진

평가: 보통

① 실현 가능성: 세계 주요 도시의 해양관광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한국은 사실상 새로 시작하는 사업, 시간이 걸린다. 실현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공약한 시설이 갖춰지면 일자리 효과는 클 것이다.

정책순위 2: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만든다

(1) 창조경제 활성화 기업 및 개인 발굴·포상

콘텐츠: ①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범위 확대, 훈격 상향 조정, 인센티브 강화 ② 창조경제 활성화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창조경제 대상의 범위 확대, 훈격 상향 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

평가: 보통

① 실현 가능성: 박근혜 정부는 이미 창조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제시된 정책방안은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성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창조경제’ 영역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역시 확실하지 않을 것 같다.

(2) 2,000억 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콘텐츠: ①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

평가: 좋음

① 실현 가능성: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중견기업 육성책이지만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중견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은 높아 일자리 창출이 클 것이다.

(3)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콘텐츠: ①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소송 이외에도 해외 지재권출원·특허전략 수립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

평가: 보통

① 실현 가능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이 가져올 일자리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콘텐츠: ①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벤처기업육성에 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② 시장친화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 개편

평가: 좋음

① 실현 가능성: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시장친화적으로 법안 내용을 개편한다는 내용인데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이는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방안인데 성공할 경우 일자리 효과가 클 것이다.

정책순위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

(1)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콘텐츠: ①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여 지역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 추진

평가: 보통

① 실현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발한 '청년희망펀드' 관련 사업으로 보이

는데 실현 가능성은 클 것이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일자리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콘텐츠: ① 경력 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운영 ② 경력단절여성 채용 수요가 많은 주요 산업별 협회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③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 부처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강화 ④ 취업여성의 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신규 제공

평가: 보통

①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 가 관건이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수요만 있다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3)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콘텐츠: ① 2017~2020년까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 공급→2020년 78.7만 개 ② 어르신 채용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③ 모든 시군구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개선

평가: 좋음

① 실현 가능성: 2017~2020년간 매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10만개씩(공익활동 6만개, 민간취업 3만개씩, 재능나눔 1만개씩, 등등) 창출하여 2020년에는 78만7천개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수요만 있다면 실현가능성은 클 것이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영향이 클 것이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 총평

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은 새누리당만 내놓았다. 공약의 재원 액수는 2017~2020년 4년 동안 연도별 예산증가분을 활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연 1.1조원씩 4.4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연도별 예산증가분을 활용한다는 것'은 증세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구실이고, 정책방안을 들여다볼 때 4년간 4.4조원은 충분한 액수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일자리 공약의 재원 액수를 제시했다는 점은 높게 살만하다.

- ②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부분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고(U턴 경제특구 설치, 관광산업 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 규제와 무관하고(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및 개인 발굴·포상,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등), 개인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및 개인 발굴·포상 등) 정책방안들이다.
- ③ 특히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 ④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규제적인 요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
- ⑤ 새누리당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54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이다(중앙일보, 2016.3.30.). 실현 가능할까?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여섯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

콘텐츠: ①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의 결단과 민간(기업·노동자)의 양보·희생으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② 미취업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과 청년 NEET들의 고용 유인을 위한 “청년안전망(취업활동지원+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도입 ③ ‘좋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하는 청년실업 및 청년NEET의 증가 원인인 저임금(25.1%)·비정규직(32.5%) 일자리를 OECD수준(저임금근로자 비중 16.3%, 비정규직 11.8%)으로 감축(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개선 공약 후술) ④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⑤ 청년창업 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과 기업의 양보가 필요하고, 저임금 올려 저임금 근로자 비중 낮추고, 비정규직 감축하여 비정규직 비중 낮추자는 방안은 전적으로 규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

(청년이여는미래가 2015년에 출간한 책 『2015 일자리 청년 속사정 리포트』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바보야,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유연성이야.”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7년부터 실시되어 왔는데도

비정규직은 증가했다. 그러나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환경 개선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 방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2. 비정규직·저임금노동 개선

콘텐츠: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 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3同원칙(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적용 및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및 노동기본권 확보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제시된 방안 가운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메리트(merit)를 줄이고 정규직 전환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방안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이 같은 노동시장 규제 정책이 도입된다면 어느 기업이 따르겠는가.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

3.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콘텐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 적용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공약 가운데 한 예: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30~50세 미만의 실업자 경우 실업급여 지원 기간을 현행 210일에서 360일로 상향 조정한다.’ 이런 공약이 실행되면 실업기간이 연장될 것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독일 노동시장 개혁에서,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54세까지는 실업수당 수급 기간을 2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였다.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정책으로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11.3%였는데 10년 후인 2015년 4.6%로 줄일 수 있었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실업 기간이 연장된다.

4. 고용안정 및 실노동시간 단축

콘텐츠: '쉬운 해고'제한, 정리해고요건 강화로 고용안정 도모,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평가: 나쁨

- ① 실현 가능성: '쉬운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제한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은 노동시장 경직의 주범이다.
-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실업을 더욱 증가시킨다.

5. 노동기본권 신장

콘텐츠: 국제노동핵심기준(ILO 핵심협약) 비준 등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확보, ILO 핵심협약에 따른 국내법적 개선

평가: 유보 (법과 관련된 공약이므로)

- ① 실현 가능성:
-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6.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강화와 위험의 외주화 방지

콘텐츠: 근로자범위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

평가: 유보 (법과 관련된 공약이므로)

- ① 실현 가능성:
-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 공약 총평

- 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 ②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인프라 구축과는 거의 무관하다.
- ③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부분 규제적이다.
- 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2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이다(중앙일보, 2016.3.30.). 실현 가능할까?

3.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실천과제 1, 2로 나누어 10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공약 1~7은 비정규직 보호, 8~10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구호: “좋은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실천과제 1. 비정규직 권익보호

(1) 보호받지 못하는 90%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회의소 설립

콘텐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700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전 세계적으로 노조조직률은 감소 추세다. 2000~2013년간 몇 나라 예: 미국 12.9%→10.8% 영국 30.2→25.4% 독일 24.6%→17.7% 뉴질랜드 22.4%→19.4% 아일랜드 38.0%→29.6% 한국 12.0%→10.3%. 이 같은 추세에 역행하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한국을 제외하고)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은 실업률이 낮은 나라들이다.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모든 근로자를 노조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노동회의소 건립은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다.

(2) 비정규직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게

콘텐츠: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60%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전형적인 기업 규제여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가 줄어든다.

(3) 계약직근로자 남용을 막는다

콘텐츠: 기간제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약직 근로자는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어 계약직 근로자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기간제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약직 근로자는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계약근로자 남용을 막겠다”는 국민의당 공약을 보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교체할 경우 대체인력 6개월간 채용 금지, 이를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업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고용의무 적용.” 실현가능성은 낮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독일은 창업의 경우 기간제근로 기간 규제를 완화하여 일자리를 늘렸다. 이로 보아 국민의당 공약은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4)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을 방지한다

콘텐츠: 현행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 파견근로자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불법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파견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이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독일과 일본은 진즉 파견근로를 전 업종에 걸쳐 실시해오고 있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독일은 파견근로를 자유화하여 일자리를 늘렸다. 이와는 달리 파견근로 남용을 막기 위해 파견근로를 강화하자는 공약은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다.

(5) 파견근로자 수수료를 인하

콘텐츠: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자 등이 취하는 수수료로 인해 임금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낮기 때문에 파견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낮추자는 공약은 규제여서 실현가능성이 낮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와는 무관할 것 같다.

(6) 감정노동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콘텐츠: 전체 취업자의 약 22%가 감정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감정노동에 대한 기업의 통제가 심해지고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건강권에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평가: 나쁨

- ① 실현 가능성: 공약 내용에 “감정 치유상담비 지원 및 산재인정 범위 확대, 감정근로 업무 담당자 순환배치 활성화, 감정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광고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낮다.
-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와는 무관하다.

(7)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받아준다

콘텐츠: 원사업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 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등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평가: 나쁨

- ① 실현 가능성: 정부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까지 받아주는 ‘조폭’ 역할도 한다는 뜻일까?
-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와는 무관하다.

실천과제 2. 일자리 창출

(8)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에도 적용한다

콘텐츠: 청년을 위해 각종 일자리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근본적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평가: 나쁨

- ① 실현 가능성: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년고용할당은 “공공기관 의무비율 5%로 상향, 5%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기업으로 확대도입, 미이행률에 대해 청년고용부담금 부과 등”이다. 이는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게 될 것이다. 이 공약이 실행되려면 먼저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낮다.
-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는 늘지 않을 것이다.

(9) 공정임금을 도입한다

콘텐츠: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다.

평가: 나쁨

- ① 실현 가능성: 정부가 나서서 ‘공정임금’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임금 경직성과 관련된 규제다.
-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10) 유아휴직근로 편히 쓰게 한다

콘텐츠: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주변 동료들이 해당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자들이 심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 좋음

- ① 실현 가능성: 공약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 때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민간기업의 추가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높다.
-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 채용으로 일자리는 다소 늘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의 일자리 공약 총평

- 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 ② 국민의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인프라 구축과는 거의 무관하다.
- ③ 국민의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부분 규제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다.
- ⑤ 국민의당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8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이다(중앙일보, 2016.3.30.). 실현 가능할까?

4. 정의당

정의당은 6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1) 박근혜 정부 반대로!

콘텐츠: 위법한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폐기,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해고 회피노력 구체화, ‘살찐 고양이법’ 제정, 실패한 경영진 우선책임제

평가: 나쁨

- ① 실현 가능성: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데 정의당은 ‘노동개혁’을 공약한다. 실현가능성은 없다.
-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 준다.

(2)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콘텐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 일소, 공기업·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여성노동자 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평가: 나쁨

- ① 실현 가능성: “시급 1만 원, 월급 300만 원” 경제를 제안했는데, 임금은 근로자의 기여도 곧, 생산성에 따라 기업이 주는 것이어서, 획일적 임금 수준 결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임금 유연성을 저해한다.
-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 줄인다.

(3)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콘텐츠: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 공공부문·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절반 감축, 5시 칼퇴근법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 선진국형 연차휴가 한 달 도입으로 휴식이 있는 삶,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감정노동자 보호,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와 기회균형채용,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지원

평가: 나쁨

- ① 실현 가능성: 공공부문과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여서 노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란 쉽지 않고 이 법이 도입되면 비정규직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노동시장 규제법을 망라한 것 같다.
-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 줄인다.

(4)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콘텐츠: 초중고 노동인권교육과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20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반드시 비준,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도입,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평가: (법 관련 공약이어서) **평가 유보**

① 실현 가능성: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기본법이 보장되고 있는데, 공무원 참정권 보장이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등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현된다면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5)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콘텐츠: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위험업무 정규직화,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정,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평가: (법 관련 공약이어서) **평가 유보**

① 실현 가능성: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의 시민안전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를 위해 기업살인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다. 실현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6)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콘텐츠: 노조 설립 신고제도 개혁으로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보장, 산별교섭의 제도화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중장기 노동법원 추진, 공격적인 직장폐쇄 금지,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노동, 경제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평가: (법 관련 공약이어서) **평가 유보**

① 실현 가능성: 노조 성장을 뒷받침한다는데, 한국 노조는 조직률이 감소해오고 있는 추세 아닌가! 따라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정의당의 일자리 공약 총평

- 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 ② 정의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인프라 구축과는 거의 무관하다.
- ③ 정의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부분 규제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다.
- ⑤ 정의당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19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이다(중앙일보, 2016.3.30.). 실현 가능할까?

[토론문 ③]

20대 총선 포퓰리즘 청년정책 진단

조 승 수
청년만세 대표

20대 총선을 맞아 지난해 최대의 이슈로 부상했던 청년문제에 대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상황과 노사관계 등 종합적인 청년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정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청년정책보다는 선심성에 치우친 한시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몇 가지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자료근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당 홈페이지 정책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청년고용할당제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더민주는 3년간 한시적으로 민간대기업에 3%씩 적용하여 첫해에 8만 5천개를 비롯하여 총 25만 5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고, 국민의당은 공공기관 의무비율을 5%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서도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한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법개정을 통해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취지야 그렇다 하더라도, 자칫 자유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왜곡시켜 오히려 일자리쏠림현상을 유발시키고 기업의 자발적 일자리 생산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을뿐더러,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청년고용할당제와 관련해 흔히 벨기에가 2000년에 한시적으로 도입·운영한 ‘로제타 플랜’을 인용한다. 하지만 로제타 플랜은 장기적으로 청년실업률 감소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난 정책이다. 벨기에에서 제도 도입 이후 잠시 하락했던 청년실업률은 3년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또한 벨기에는 대학진학률이 30%대에 불과한 특수 상황에서 저학력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우리 상황과는

그 전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의 현실에서는 대기업으로의 쏠림 현상만을 유발시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켜, 현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정책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 미취업자가 장애인과 같은 정도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청년 미취업자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년고용할당제는 세대 갈등만 부추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 이 문제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다른 연령층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청년 미취업자만 의무고용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그만큼 전직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취업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지난 입법논쟁에서 이렇듯 술한 문제가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되새김질 하듯이 청년공약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취업지원수당

주요 야당들은 모두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더민주는 만 19~29세 청년 중 저소득 미취업자 10만명(6개월 5만명)을 선발해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의당은 더민주보다 대상자를 확대했다.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실업급여 소진자 중 가구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청년디딤돌급여’ 월 50만원을 제공한다. 신청조건에 부합되면 무조건 지원받는 정책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은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25~34세 이상의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만, 취업에 성공하면 고용보험요율을 할증(0.65%→2.5%)해 최대 250만원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해 다른 야당들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두고 있다.

최근 최악의 청년구직난을 생각할 때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논의는 필요한 부분이고 이후에도 점차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시된 청년수당들이 구직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구직 이후 일부를 상환한다고 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있었던 문지마시식 현금지원은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의 1차적인 문제는 예산확보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소요될 예산으로 더민주는 매년 2500억원, 정의당은 약 26만명 신청 기준으로 2조 원, 국민의당은 5년 동안 5000억원으로 자체 추산하였다. 자체로 추산한 예산액만 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고용보험기금을 일부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돈을 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을 기여도 안 한 청년들을 위해 쓴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고용보험기금의 건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매년 반복하는 부자증세, 대기업 사내유보금 등을 빼앗아 시행한다는 뻔한 이야기는 포퓰리즘 공약임을 스스로 강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때문에 청년들의 대기업·공공기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짐으로 인해 취업연령이 높아지고, 취업준비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일률적인 취업지원수당은 오히려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그리고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연령층의 저소득구직자와의 차별의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취업상담, 구직, 직무교육과 관련해 수당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와 같은 정책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현금지원을 미끼로 한 총선용공약이 되지 않게 하려면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최저임금(시급) 1만원

더민주는 2020년,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에 새누리가 20년까지 최대 9000원을 제시하면서 포퓰리즘 공약 남발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되었다. 최소 새누리가 제시한 공약대로 하더라도 올해 인상률인 8.1%를 해마다 유지하거나, 10% 선으로 올려야 한다. 나아가 더민주와 정의당 공약대로 1만 원까지 올리려면, 매년 13.5%씩 인상해야 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년(8.3%) 이후 최대 폭 인상에다 첫 6000원대 진입이었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은 2.75~7.2% 수준이었다. 또한, 이미 이번 정부에서는 7.2%, 7.1%, 8.1%로 이전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 경기침체 속에 매해 성장률 3% 달성 이 빠듯하고, 물가상승률은 0%대를 이어가는 현실에서 인상 폭이 지나치다는 평가는 당연하다. 더구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을 낳는다. 그 첫 번째가 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노동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다른 근로자의 희생으로 운 좋은 근로자가 높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른 임금을 부담해야 할 주체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과연 이런 식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생활안정과 내수시장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곧 시작될 최저임금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총선을 맞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기대심리를 높여놓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은 최저임금이 마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학등록금

새누리, 국민의당은 학자금대출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섰으며, 더민주는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추고 학자금 대출도 무이자로 전환, 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더민주는 공약 실현을 위해 약 1조 800억 원, 정의당은 약 3조원을 소요예산으로 추산하였다.

지난 총선에서 당시 여야였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청년표심잡기 반값등록금 정책이 4년 만에 다시 등장하였다. 반값등록금 공약에 따라 지난해 연간 등록금 14조 원 가운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된 돈은 7조 원이다. 이 가운데 대학의 부담분이 3조 원이 넘는데다가 각 대학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받기 위해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대학은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미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더 낮추면 대학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립이던 사립이던 국가재정을 더 쏟아 부어야만 가능한 공약들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반값 등록금’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학부모와 학생은 많고, 학생의 노력과 무관하게 가정의 소득 수준만 따져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대학진학률이 조금씩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0%를 넘어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반값등록금이 교육개혁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일자리미스매치라는 청년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민간 경제연구원장 등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총선 공약을 평가한 결과 국·공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더민주의 공약이 4·13 총선 공약 중 가장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공약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재정마련에 기반한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는 총선용 청년팔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국민의당 청년희망임대주택, 더민주의 쉐어 하우스와 스마트주택, 새누리의 행복주택 등 선거철마다 나왔던 공약들이 이름과 수치만 약간 바꾼 채 다시금 청년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더구나 여당이든 총선에서도 제1당이 예상되는 새누리에서 지금 시점에서 고교무상교육

과 같은 공약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연구소는 2년 전 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교생 중 60.7%가 고교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한 부모·농어업인 자녀, 특성화고 학생 등에게는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오던 새누리의 이런 모습은 학부모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만든다. 또한 새누리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희망아카데미와 벤처 장학제도, 청년국제인턴 등은 모두 기존 정부에서 해오던 사업들을 이름만 좋게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해 종합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노사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재해자 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노조 추천자의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규정을 두고 있는 단협이 694개(25.1%)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협약이라 하지만 우선·특별채용 등 '고용세습' 규정은 결과적으로 노동권력에 의해 청년 일자리가 뺏기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이번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취업 준비생들은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즉각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조치를 촉구하였다. 10대 공약에도 없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선심성 공약은 바로바로 만들어 내면서도, 이와 같이 청년들의 목소리에는 외면하고 일자리 문제에 숨어있는 종양을 제거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약도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가 매우 아쉽기만 하다.

'20대 총선, 정당별 청년정책' 평가

백 경 훈
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

▶ 청년이여는미래는 20대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의 10대 청년정책을 뽑아(3/7기준) 블라인드 설문조사(정당명은 가리고 정책설명만으로 설문)를 진행한 바 있음. 본 토론문에서는 이에 대한 결과, 분석과 함께 최근 추가된 청년정책까지 보완하여 평가하였음.

▶ 주요정당 20대 총선 10대 청년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

(문항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적절성을 평가)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적절성	평균
 새누리당	청년층 국민연금 혜택 확대 (저소득 근로자와 청년 창업가 등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금보험료 10~20%지원)	2.9	2.6	3.1	2.9
	청년 희망 아카데미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확대 지역청년을 일자리 제공 및 청년과 기업의 매칭, 신규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맞춤형 일자리 확대)	3.4	3.2	3.6	3.4
	벤처장학제도 (전문계고, 대학교 이공계열 재학생에게 '벤처학자금'을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에 의무 근무)	3.0	2.9	3.2	3.0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적절성	평균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70만개 (공공 일자리 34만 8천개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25만 2천개 창출/ 일하는 시간 단축 11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	2.5	2.5	3.4	2.8
	취업활동비 지급 (청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비(월 60만원×6개월)지급)	2.2	2.0	2.7	2.3
	청년주거 개선 (2~4룸식의 청년용 쉼어하우스 5만호이상 공급/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공급 및 주거지원 대출 요건 완화)	3.0	2.9	3.5	3.1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적절성	평균
국민의당	컴백홈법 (국민연금기금으로 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청년 주거문제 해결.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3.0	2.8	3.4	3.1
	정규직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의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청년 고용을 의무화(5%))	2.8	2.7	3.3	3.0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등록금 (실현가능성 2.4 지속가능성 2.5 적절성 3.5 평균 2.8) • 공공기관 행정인턴 모두 계약직 전환 (실현가능성 2.6 지속가능성 2.6 적절성 3.1 평균 2.6) 			

※ 설문조사 <조사대상: 전국 20~30대 청년 500명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16.03.07. ~ 03.14.>
<청년이여는미래 - 20대총선 청년정책요구안 중>

▶ 각 당은 앞 다투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20대 총선 공약을 내놓았음. 일자리 정책을 1순위로 내건 새누리당을 비롯해 청년수당을 약속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정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국민의당은 각자의 비전을 제시함. 진단은 비슷하나 처방은 조금씩 다름. **대표적인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청년수당'정책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당장 청년의 마음을 사는 포퓰리즘 성격, 용돈 나눠주기식 청년대책을 배격한다"며 야당의 청년수당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임.

▶ 청년 500인의 평가 결과, 청년수당 공약이 최하점

더불어민주당 취업활동비(월 60만원×6개월) 지급

실현가능성	매우낮음 36.5%	낮음 28%	보통 22.4%	높음 8.9%	매우높음 4.2%
지속가능성	매우낮음 42.9%	낮음 28.6%	보통 19.2%	높음 6.7%	매우높음 2.6%
적절성	매우낮음 29%	낮음 15.9%	보통 25.8%	높음 17.3%	매우높음 12.1%

<청년이여는미래 - 20대총선 청년정책요구안 중>

10대 청년공약 중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적절성 문항 모두에서 예외 없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취업활동비(월 60만원×6개월) 지급>공약.(평균2.3점) <구직 청년들에게 반년 간 수당 300만원 지급>을 주겠다는 국민의당 공약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수당 공약. 청년들은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적절성 문항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줌.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이 44.9%로 적절하다는 비율 29.4%보다 높았음) 대상자인 청년들조차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약이라면, 선거만을 위한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반드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 현금과 숫자를 내세운 공약, 점수 낮아

정당	정책	평균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적절성	
상위공약 3가지	새누리당	청년 희망 아카데미	3.4	3.4	3.2	3.6
	더불어민주당	청년주거 개선	3.1	3	2.9	3.5
	국민의당	컴백홍법	3.1	3	2.8	3.4
하위공약 3가지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70만개	2.8	2.5	2.5	3.4
	정의당	공공기관 행정인턴 모두 계약직 전환	2.6	2.6	2.6	3.1
	더불어민주당	취업활동비 지급	2.3	2.2	2	2.7

<청년이여는미래 - 20대총선 청년정책요구안 중>

‘청년수당 ○○원 지급’, ‘무상교육’, ‘진짜 반값등록금’, ‘모두 계약직 전환’ 등 주로 직접 지원 정책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줬.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정책에도 낮은 점수를 줬. 역대 최고라는 청년실업의 현장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개 창출은 공허한 구호로 다가옴. 이와 반대로 새누리당의 <청년 희망 아카데미> 정책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현금과 숫자를 내세운 공약보다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청년들에게는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온 것으로 보임.

주거 관련된 공약들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실제 서울을 벗어난 지역 청년들은 주거 문제에 잘 공감하지 못함. 정당별로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과 지역의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함. 블라인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당에 대한 편견을 배제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보았음.

▶ 본선이 시작된 최근까지도 각 당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일자리 큰 그림’을 이야기 함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 “더 좋은 청년일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는 국민의당. 슬로건만 보면 각 당의 거시적인 방향 자체는 매우 적절하다 보여짐.

▶ 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고개가 기울음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다는 청년일자리 70만개의 50%는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만들겠다는 것임. ‘직접 일자리’를 정부와 국회 주도로 직접 만들겠다는 것. 이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되짚어 보면 정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미리 진단해볼 수 있음.

청년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계	비율
직접일자리	696,983	594,774	701,392	692,091	828,169	423,600	327,600	383,700	4,648,309	38%
직업훈련	275,543	264,355	355,730	405,035	455,507	568,100	671,700	942,700	3,938,670	32%
고용서비스	94,753	75,720	91,789	63,965	75,759	71,500	146,200	212,600	832,286	7%
고용장려금	76,553	85,933	59,775	79,860	99,385	118,000	167,700	256,000	943,206	8%
창업지원	68,113	93,256	146,442	324,376	331,535	240,400	445,300	326,300	1,975,722	15%
합 계	1,211,900	1,114,038	1,354,528	1,565,327	1,790,355	1,421,700	1,758,400	2,121,300	12,338,193	

※ 2009~2013년 통계는 감사원(2015, 다부처사업), 국회예산정책처(2014) 자료 참고

※ 2014년 통계는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일자리 사업예산(국회예산처 2014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고용노동부 p.67 참고)

※ 2014년 청년일자리 예산안은 1조 7,740억 4,500만 원(2014 다부처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2015~2016년 자료는 2015년 9월 발표,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일자리 예산안 주요내용' 참고
<청년이여는미래 - 2015 청년일자리 속사정리포트 >

청년일자리 예산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예산 비중이 다른 4개 분야의 예산을 압도함. '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참여자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임. 문제는 예산 중 상당액을 직접일자리사업에 쏟아 부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는 점.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기업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간만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이 끊기면 고용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기 때문. OECD는 고용 효과성이 낮은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을 낮추고, 항구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2014년에 이르러서야, 직접일자리사업 예산 비중을 낮추고 직업훈련, 창업지원 예산 등이 증가하기 시작함.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 번 시행하면 끝나는 일회성 정책이 아님. 정부나 국회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 수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 공공일자리는 결국 우리 가족들이 어렵게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기업과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 결국 수 만, 수 십 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

▶ 기업 압박해 공정한 일자리 만들겠다는 국민의당

국민의 당이 내세운 노동·일자리 공약을 보면 '노동회의소 설립',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 '청년고용할당제', '기간제 근로자 사용 휴지기 도입', '불법 파견·사내하청 근절' 등 기업을 압박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짜내보겠다는 계획으로 보임. 현 노동시장의 문제의 원인이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님. 해결책 또한 기업에서만 찾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대책임.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 기업이 투자와 이윤창출, 신규채용의 선순환 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 또한 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과 제도, 안전망을 만드는 것.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일자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시장의 기준을 바로잡는 일 또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임.

▶ **결국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함, 유의미한 청년안전망 공약**

‘창조경제’, ‘중소기업 지원’, ‘벤처 육성’, ‘관광산업 육성’ 등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틀을 맞추어 정책을 제안함.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나마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했다 평가함. 청년정책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 ‘학자금 대출 금리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제도 사각지대 개선’, ‘대학 입학금 폐지’ 등 대학 울타리 내에 있는 청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국민의당 공약과 ‘청년창업환경 개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눈에 띄는 청년안전망 공약이라 할 수 있겠음.

▶ **경제의 선순환과 활력에서 나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시장이 필요**

우리는 생떼를 써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아닌 경제의 선순환과 활력에서 나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시장을 바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무수히 제공해줄 것만 같은 숫자놀음은 경계해야 함. 대신 노동시장의 활력을 주기 위한 개혁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는 환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당별 공약들은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이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함.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